

해양수산부 훈령 제151호

「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2014년 02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
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

○ 제정내용

- 「건설기술 관리법」에 따라 해양수산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